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여성가족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장 전문성을 존중하기 위하여 기업 등의 가족친화인증 업무 수행 기관 종사자 자격요건으로, 학력을 취득하기 전에 가족친화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했던 경력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명시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별표 1(제14조제1항 관련) 의 가족친화 인증기관 인력 요건에 학력 취득 전 가족친화 관련 분야 2년 이상 근무했던 경력 인정 규정 명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제14조제1항 관련)의 2호 인력 가목에 (졸업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를 추가한다.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조직

3년 이상 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일 것

2.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5명 이상 확보할 것
가.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가족친화교육
및 컨설팅 등 가족친화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졸업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나. 가족친화인증 심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부 칙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연 락 처	(02) 2100 - 6363